

10-74 대학원혁신사업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

2021.02.18. 제정

2021.11.02. 개정

주무부서 : 대학원 대학원연구기획팀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(이하 ‘본교’)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 대학원혁신사업 운영 규정」 및 「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」에서 정하는 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 중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본교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혜 대상자) ① 석·박사과정 대학원생(학기 중 등록자)에 한하여 지급하고, RA·TA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경우 본 조의 제2항,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경우 본 조의 제3항에 따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8.27., 2021.11.02.>

② 대학원 본부 차원의 대학원생 RA/TA 제도 운영 시 BK21 교육연구단(팀) 소속 학부(과)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, BK21 교육연구단 소속 학부(과) 전일제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, BK21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또는 연구활동 등과 연관된 RA/TA 대학원생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. 다만,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제외한다. <개정 2021.08.27., 2021.11.02.>

③ 대학원 차원의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시, 장학금 수혜 대상은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 한다. <개정 2021.08.27.>

제3조(장학금 종류) 본 대학원혁신사업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증서 환불의 보조금 장학 유형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다.

1. RA(Research Assistant) · TA(Teaching Assistant) 장학금
2.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
3. 포상성 장학금(시상금)
4. <삭제 2021.11.02.>

제4조(RA · TA장학금) 소속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과 소속 부서장의 제청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액 및 선발기준은 본교의 「교육·연구조교 임용 내규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) 우수 인재 유치, 사회적 배려자, 리더십 우수자 등 대학원차원의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며 지급액 및 선발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 본교의 「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26조의2, 제27조, 제33조의3, 제36조, 제52조, 제53조, 제57조, 제59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1.08.27.>

제6조(포상성 장학금) 대학원혁신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중 뛰어난 성과가 있는 학생에게 주는 장려금(시상금)으로 그 지급액 및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발기준 :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평가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주관 부서장이 선정

2. 선발과정에 의해 순위가 부여되는 경우 세부명칭은 ‘최우수상’, ‘우수상’, ‘장려상’으로 하며, 차등적으로 지급 가능
3. 장학금액 : 프로그램의 규모 및 참여 인원, 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우 최대 500,000원, 그룹/팀의 경우 최대 2,000,000원(그룹/팀 당) 지급 가능

제7조(현장실습 프로그램 장학금) <삭제 2021.11.02.>

제8조(준용) 본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「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」,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 관련 훈령 및 지침과 본교의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 대학원혁신사업 운영 규정」, 「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」,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, 「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」, 「조교 규정」, 「교육·연구조교 임용 내규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8.27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내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개정 2021.08.27.>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개정 내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개정 2021.11.02.>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